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2년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 일 시 : 2022. 5. 17. (화) 10:00

□ 장 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이광복 위원장
황성욱 위 원
김우석 위 원
윤성옥 위 원
정민영 위 원(이상 5인)

□ 불참위원 : 없음

□ 확 인 :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인)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0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이광복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세요.
- 이용수 방송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층 방청석에는 MBC 정준희 기자, PD저널 엄재희 기자, 채널A 남혜정 직원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2. 개회선언

- 이광복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이광복 위원장
 - 오늘 회의는 규칙에 따라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광복 위원장
 - 전차회의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지상파방송 부문)(제2022-방송-14-0089호)

■ 제2022-방송-14-0089호 <JTV-TV ‘클릭 이사람’>

- 이광복 위원장
 -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결 안건 14건, 보고 안건 1건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JTV-TV ‘클릭 이사람’ 출석하셨죠?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예.

- 김우석 위원
 - 이것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지난번에 전주방송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한 게 있었죠. 원광대학교인가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원광대 관련은 전주MBC였고요. JTV-TV는 ‘JTV 8 뉴스’ 임실치즈 할인판매 보도 관련하여 ‘권고’ 의결하신 건이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임실치즈요? 알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안건 보고해 주세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JTV-TV ‘클릭 이사람’ 2021년 11월 14일 방송분입니다. <더 타워>라는 부제로 전은수 JGC 그룹 회장이 출연하여 진행자와 함께 미국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방문하여 각 랜드마크의 의미, 기능 등에 대해 언급하고, 각 랜드마크와 전주시의 대한방직부지에 추진 중인 전주타워 복합개발사업을 관련지어 대담하는 내용, (주)자광이 개발 추진 중인 전망타워 홍보 영상을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가 대한방직부지 개발 건축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자광’이라는 업체명을 협찬 고지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심에 따라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진술자로 JTV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실장이 출석 대기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진술자 모셔주세요.

(의견진술자 입장)

- 이광복 위원장
-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전주에 있는 JTV 전주방송의 유진수 아나운서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보내주신 의견진술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전부 읽어보셨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두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시간 주시면 한 1분 30초 정도로 변론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릭 이 사람' 진행을 맡고 있고요. 부제로서 <더 타워> 진행 및 연출을 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전주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불멘소리를 합니다. 타워를 언제 짓는 것인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 6년이 지나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도민들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으로 지난 30년간 희망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고요. 470m 정도의 타워와 복합개발은 전주에서 이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는 참여연대라든지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함께 위원들로 참여해서 74%의 지지를 얻어낸 민간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전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과 시장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역시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한 해에 청년들이 7,000여명이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옥마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찾지 않아서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사면 관련돼서 탄원서를 냈다가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개발자를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꼭 타워를 짓겠다는 확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의도로 제가 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전문 PD가 아닙니다. 25년 아나운서로서 처음 특집을 했고 낙후 전북, 고향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 이광복 위원장
- 짧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선처 부탁드립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옥 위원
 - 보통은 심의실 쪽에서 주로 의견진술을 하러 오시는데 직접 오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획부터 방송까지 전적인 책임이 있으셨습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제가 맡고 있는 '클릭 이 사람'은 제가 아나운서이지만 진행과 제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아무래도 열악하다보니까 아나운서도 제작에 투입이 됩니다.

- 윤성옥 위원
 - 이게 800회 특집인데요. 그러면 계속 연출을 같이 겸해서 담당해오셨나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제가 25년차인데 연출까지 겸임하게 된 것은 한 10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서요.

- 윤성옥 위원
 -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그동안 해왔듯이 연출과 진행을 같이 하신 것이네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 윤성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의견진술서 보니까 '전주 시민의 74%가 상업화 시설을 희망했다.'라고 인용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전주 시민의 74%가 아니고요.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 해서 1,500명을 표본추출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 결과가 민간 개발 프로젝트 대해서 74%의 지지를 얻었고요.

- 윤성옥 위원
 -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74%가 상업시설을 희망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맞습니다.
- 윤성옥 위원
 - 보통은 74%의 국민이든 시민이든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26%의 소수 의견을 방송에서 다루어야 그것을 우리가 공적책무를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26%의 여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후속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님과 사전 접촉을 해서 특강 형식으로 해서, 반대 의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광주사무소에서 들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윤성옥 위원
 - 꼭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알겠습니다.
- 윤성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정민영 위원
 - 제가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제작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뉴욕이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현지에서 통역, 메이크업까지...
- 정민영 위원
 - 실장님하고 여기 자광 대표님, 카메라 감독 세 분이...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아니, 스태프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 정민영 위원
 - 같이 뉴욕에 며칠 갔다 오셨나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11박 12일이요.

- 정민영 위원
 - 11박 12일 하셨다고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호텔비 자체도 워낙 비싸서요.

- 정민영 위원
 - 그러면 2,000만 원이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정산 업무는 우리 여직원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제작비는 모두 자광 쪽에서 부담을 했나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 정민영 위원
 - 이 프로그램이 2021년 11월 14일에 방송이 되었고 이것을 오랫동안 기획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된 때가 언제쯤입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방송은 작년에 나갔고요. 작년 초쯤에 한 것 같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지금 프로그램 내용들과 관련해서 제작비를 부담했던 자광 쪽하고 논의를 계속 하면서 기획을 하신 것인가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자광 측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광하고는 7월 정도에 만난 것 같습니다.

- 정민영 위원
 - 그러면 자광 전은수 회장하고 같이 뉴욕에 가서 랜드마크와 관련해서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을 실장님이 자광과 협의 없이 그냥 혼자 결정을 하신 것이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제가 기획을 했고 대본 작업까지 작가 없이 다 했기 때문이에요.

- 정민영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자광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처음에는 자광 회장을 거기에 데리고 갈 생각은 없었고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개발자를 데리고 가서 꼭 짓겠다는 언약을 방송을 통해서 받고 싶었던 마음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 정민영 위원
 - 뉴욕 현지에 찾아가서 전주에 지을 건축물 영상이랑 조감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는 내용은 실장님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자광 쪽의 아이디어인가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온전히 저의 기획안입니다.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다 했고요.

- 정민영 위원
 - 제가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여기다가 초고층 타워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그냥 뉴욕 사례를 보여준다고보다는 전주에서 이게 꼭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예를 들면 자광의 전은수 회장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이게 꼭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획의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워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타워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오해가 있어서 꼭 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사실 담았습니다.

○ 정민영 위원

-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광 전은수 회장을 출연시키고, 여기로부터 제작비를 받고 같이 뉴욕에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청자들이 보기에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그 부분은 26%의, 아까 위원님이 언급해주신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이고, 74%의 찬성 쪽으로 밸런스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제가 소신을 갖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전주 토박이시라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 김우석 위원

-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 존중합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작비가 대부분 자광에서 나왔고 뉴욕에 11박 12일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자광에 먼저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광이 이런 프로그램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숨은 의도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지지부진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도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전주 시민들은 이것마저도 무산이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꼭 짓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라고 하면 그것은 자광에서 인허가 관계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자광은 당연히 의지가 있죠. 그것을 확답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명분을 가지고

조감도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자광 측에서 이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인허가 문제잖아요. 사실 인허가라고 하는 것이, 공약사항이 인허가에서 불발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제반적인 환경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허가 과정에 약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인허가보다는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개발이익환수 부분에서 퍼센티지 차이가 있어서 지금...

- 김우석 위원
 - 아니, 그게 인허가의 결정적인 요소죠.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그래서 그 사례를 서울시에서도 지금 세운상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미국의 허드슨 야드인데 그 허드슨 야드 부사장을 찾아갔던 이유도, 뉴욕시와 민간개발업자가 해안을 모아서 엄청난 특혜를 줘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진 사례거든요. 거기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자광 회장과 같이 가서 대안과 해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지금 자광에서는 18%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40% 환수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규모라고 하면 40% 정도를 하는 게 적절한 수준 아닌가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법 규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40에서 60% 정도를 시에서 땅값 부분에 대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30% 정도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광에서는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여론화를 하려고 그런 의도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그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광에서는 용적률 자체도 높이지 않았고요.

- 김우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금 프로그램 제작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열악한 지방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한방직 이 부지가 업자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부지인 것은 아시죠?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시내 중심이어서 탐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그러니까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게 항상 수석어로 붙잖아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사실 이게 여의도 공원 크기의 굉장히 큰 부지이고 시내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업자들이 탐을 내고 이럴 수 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에 문외한이지만 제가 들을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부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가 항상 상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허가가 확정되기 전에 확정된 것처럼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주의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게다가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JTV가 여론몰이 식으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임실치즈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지역특산물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4분의 1이 반대를 하고 있던 말이에요. 찬성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균형을 만드는 게 방송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충정도 알고 열정도 알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고 굉장히 핫한 스폿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주의하겠습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여

쫓겠습니다. 지금 이것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의견진술서에서는 여야도 다 찬성하고 있고, 시민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다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부지의 40%를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공론화 위원회의 전제가 좀 과하다 이런 취지 아니세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자광이라는 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 의도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성욱 위원
- 그렇죠?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 황성욱 위원
- 제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싶었던 것은 방송심의에서 위원님들은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규정 조문 자체가 광고효과, 협찬주에 대한 직접적 광고효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자광 측에서 사업개발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광이 사업하는 것은 열의가 있고 다만, 자광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갖고 있으니깐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그것이죠?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군수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도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오죽하면 공약에 넣을 정도입니다.

○ 황성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지역매체로서 지역발전을 바라고 그런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간 후 시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제가 SNS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 또 이 타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많이 돌아섰고 또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제작비라든가 뉴욕 출장비용 문제도 석연치는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게 포커스가 될 사안이 아니니까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더구나 시민도 아무도 안 나오고 기업체 대표하고 대담자만 나와서 계속 진행하는 게 이게 광고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위 총대를 메는 방송인 것 같기는 했는데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와중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시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것을 취재해서 중간에 삽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것은 왜 빠졌을까, 나중에 하반기에 특강 형태로 다룬다, 글썄요,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다, 그렇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출하고 직접 제작하신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상당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개발사업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선불리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아마 아실 테고, 이게 허가가 나서 개발사업이 제대로 됐든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이니 이런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큰 사업에는 당연히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럴 때에 여기서 앞장선 기업의 이익만 이야기하는 이런 입장에서 초점이 돼서 나중에 안 좋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신 이런 인상이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자체는 누가 봐도 이게 광고이지 기사인가, 연출하신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의 소치임을 인정하는데요. 외람되지만 저는 순수한 의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 이광복 위원장

- 아니, 저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예를 들면...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대장동하고 비교되는 것도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도 같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만금이 3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 이광복 위원장

- 제가 여쭙보는 것은 보도프로그램이냐 다큐냐, 어떤 프로그램인지 성격만 간단히 듣고 싶은 것이에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편성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도 아니고요. 인터뷰 형식을 비롯한...

○ 이광복 위원장

- 알겠습니다. 방송 나가고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자평을 하고 계시니까. 심의규정, 방송의 형태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 김우석 위원

- 혹시 자광 기업이 전주나 전북 지역에서 사업했던 레퍼런스가 있나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 유진수 전주방송 아나운서실장

- 예.

○ 김우석 위원

- 알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멀리서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 이광복 위원장

- 제재수위 말씀해 주시죠.

○ 정민영 위원

-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사안으로 안전이 올라왔는데, 통상 저희가 이 조항과 관련해서 다루었던 안전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도 막대한 경제적인 이권, 이해관계들이 사실 걸려있는 문제인데, 핵심 당사자인 회사의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볼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도 조정할 생각은 있는데 저는 '경고' 이상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일단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을 통해서 인허가 기관을 압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방송사가 지금 다 기획을 한 다음에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서 광고효과가 있었고 여론을 통해서 인허가를 압박하는 이런 그림은 사실은 개발업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새로운 모형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방송사가 열악한 상황인 것은 다 알겠는데 심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제작도 하고 편성도 하고 제작비 조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내부적으로 통제나 균형 기능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기에는 사실은 방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개발업자가 광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과징금' 정도로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은 정민영 위원님이 '경고' 이상이라고 하니깐 저도 '경고'와 '과징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윤성옥 위원

- 방송사가 협찬을 받아서 협찬주에게 유리하게 방송한 사안입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협찬주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방송에서 협찬을 받아서 협찬주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저는 공정한 방송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대학도 경쟁을 합니다. 저는 전주MBC 원광대 사안과 유사한 사례라고 봅니다. '주의' 의견 내겠습니다.

○ 황성옥 위원

-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자광이라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이 좀 더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개발이 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줄다리기 싸움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로부터 방송이 제작비를 사실상 지원받고 또 거기 당사자가 마치 어떤, 지금 이야기한 진술서에도 보면 정작 시민공론화위원회의 40% 환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정당하다는 식으로 모순적인 자기방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자광이라는 개발업체에 홍보를 해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우석 위원님, 정민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중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지역방송이고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상대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윤성옥 위원님과 같은 '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김우석 위원님 지적처럼 심의 기능이라든가 내부에도 이런 것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선이 있었다면 방송이 이렇게 나갔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책 입안자들을 압박해서 빨리 인허가를 내주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주 역력히, 잘못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방송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진 선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업주의 이익만 생각한 것 아닌가 싶어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연출자로서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안하고 제작비도 조달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언론인으로서의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그 방송의 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입니다. 정 위원님 '경고' 이상, 김 위원님도 '경고'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이신지, '경고' 위가 '관계자 징계'죠?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예.

○ 정민영 위원

- 저도 '관계자 징계'에 동의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 안건은 '관계자 징계' 3인으로 '관계자 징계'로 의결합니다.

나.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전문편성채널 부문)(제2022-방송-14-0091호)

■ 제2022-방송-14-0091호 <캐리(carrie)TV '장난감 친구들 : 탐구생활' 아이스크림 만들기 놀이>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91호 캐리TV '장난감 친구들 : 탐구생활' 아이스크림 만들기 놀이' 안전 보고해 주세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의결번호 91호 캐리TV '장난감 친구들 : 탐구생활' 아이스크림 만들기 놀이'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아이스크림 만들기'라는 주제로 장난감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며, '하프의 빙수메이커', '뽕뽕이 아이스크림 가게' 등 장난감 상품의 포장 및 구성품,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상품들의 기능을 시현하며 가지고 노는 장면을 연출하는 내

용을 방송한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진술서 주요내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유튜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채널로 시작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난감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으며, 2017년 IPTV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적 받은 프로그램의 해당 장난감은 제품을 협찬 받거나 금전적 대가의 광고성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품은 자체적으로 구매한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으로 선정되었고, 어린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 캐릭터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어린이 눈높이를 위해 친절하게 장난감을 묘사하거나 시현하는 장면은 어린이 장난감 프로그램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묘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사는 그동안 장난감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상품광고 소지를 없애고자 소재 선정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내부 심의를 거쳐 심의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지적을 통해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광고성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향후 제작하는 장난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 이게 처음인가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캐리TV는 처음입니다.

○ 윤성옥 위원

- 저는 결론적으로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항 적용에서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는 시현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서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의 만들기 시현 프로그램인데 시현이 과도하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제외하고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만 적용했으면 합니다. 제2항제1호는 특정 상품명을 음성이나 자막으로 노출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프의 빙수메이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음성으로 소개도 하고, '뽕뽕이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장난감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빙수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특정 상품명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유사사례가 있나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유사사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애니맥스 채널의 '도티의 방과 후 랭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유튜버가 출연해서 장난감을 갖고 놀며 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의'했던 사례가 있고, 디즈니 채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그러면 저도 '주의'로 하겠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유튜브에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애들은 장난감을 다 살 수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이 콘텐츠가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TV로 가져왔을 때 우리 심의규정과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저는 향후에는 이런 식의 콘텐츠를 방송에서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심의규정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저도 '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도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난감에 대한 방송을 사실은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심의규정이 있고 또 명백하게 심의규정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주의'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윤 위원님은 적용조항을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 윤성욱 위원

- 예, 맞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안건이 2개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게 구독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했죠?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해당 채널 구독자는 200만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그런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이것을 방송으로 갖고 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유

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지 않을 텐데 ‘유튜브에서 갖고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규정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고 광고효과와 관련해서 조금 많이 나간 측면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는 ‘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래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건은 전원 합의로 ‘주의’로 의결합니다.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위원장님, 적용조항은 어떻게 하실지 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알겠습니다.

다. 방송심의에 관한 건(지상파방송 부문)(제2022-방송-16-0103~0107호)

■ 제2022-방송-16-0103호 <MBC-TV ‘실화탐사대’>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103호 MBC-TV ‘실화탐사대’ 안전 보고해 주세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MBC-TV ‘실화탐사대’ 3월 5일 방송분입니다. <현상금 1,000만 원! 고양이 건드리지 마라!>를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양이 학대 영상과 추가 범행 예고글이 게시되었다는 내용 및 해당 글 게시자를 추적하는 과정을 전하며, 불에 타고 있는 고양이가 들어 있는 포획틀이 찍혀 있다는 제보자의 음성에 이어, 제보 영상을 보고 출연자들이 놀라거나 분노하는 장면, 철제 포획틀에 갇힌 고양이에게 산 채로 불을 붙이자 고양이가 몸부림치는 모습과 고양이의 헐흔, 불길에 치솟는 모습 등을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을 ‘충격적인 장면이 있으니 임산부·노약자는 시청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방송하였으며, 제작진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원본 영상과 범행 장면을 비교하면서 포획틀 안에 갇힌 고양이 사체, 불길에 치솟는 모습 등의 영상 캡처 사진을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였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5호이며, 방송자문특위에서는 ‘심의규정 위반’ 4인, ‘문제없음’ 3인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정민영 위원

- 방송에서 다루어진 영상이 자극적인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벌어진 실화를 베이스로 해서 관련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고, 방송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사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소재가 자극적이었다고 봐야지, 제작진이 이 사안을 다룬 방식이 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상도 흐림 처리를 한다든지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서 프로그램 취지와 이 내용의 맥락을 고려하면 저는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세요.

○ 황성욱 위원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안이 끔찍하지 방송이 끔찍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워낙 끔찍하니까요.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는 관점에 대한 제 주관에 개입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의견제시' 아니면 '문제없음' 정도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할까 생각합니다.

○ 윤성욱 위원

- 심의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5호를 보면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동물학대 장면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있는데요. 아마 방송사에서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인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향후에 사업자들이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를 위한 기획의도이고, 또 이 사안이 민원이 아니라 모니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의견제시' 정도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 저도 사실은 이것을 보고 끔찍했는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참 불편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제나 이런 것을 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견제시' 정도로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물론 그런 영상을 보면서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긴 하는데 나름대로 저 정도면 영상 처

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문제없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 황성욱 위원

- 그러면 저도 '문제없음'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문제없음' 3인, '의견제시' 2인 해서 '문제없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제2022-방송-16-0104호 <OBS-TV '베어그릴스의 지옥 탈출'>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OBS-TV '베어그릴스의 지옥 탈출' 안전 보고해 주세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의결번호 104호 OBS-TV '베어그릴스의 지옥 탈출' 3월 13일 방송분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베어 그릴스가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보여주며, 야자나무 아래에서 뱀을 잡은 뒤 살아있는 뱀의 머리를 칼로 자르고 뱀의 몸통에서 흐르는 피를 수차례 받아 마시는 장면, 뱀의 몸통을 입에 물고 손으로 뱀의 몸통을 쥐어짜 피를 빨아 마시는 장면 등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방송하였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윤성욱 위원

- 팀장님께 여쭙보겠는데요. 앞선 사례와 저는 유사하게 보이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 27조(품위유지) 조항을 적용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전 심의 안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5호에서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의 살상 장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일단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사막에서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했고, 뱀을 죽이는 장면 자체보다는 출연자가 뱀의 피를 마시는 장면들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위주로 판단해서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적용하였습니다.

○ 윤성욱 위원

- 이 프로그램 안에서 뱀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 장면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제37조(충격·혐오

감)제5호를 적용해도 되고, 품위유지 조항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제33조(법령의 준수) 조항이 있어요.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해서 제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 채취를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뱀의 피를, 채액을 채취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금지 행위이고요. 제8조제5항에는 이러한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전시·전달·상영·인터넷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사실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33조(법령의 준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정제재가 불가피해서 '주의'로,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제 생각에는 '베어그릴스의 지옥 탈출'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그 취지가 완전히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화탐사대'가 '문제 없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실화탐사대'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을 가르는 장면을 흐림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지나치게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견제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게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틀면서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트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물론 장면 자체는 조금 끔찍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의견제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도 두 분 의견에 따라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이게 바깥에서 가지고 온 프로그램이니까 손대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실화탐사대'하고는 상당히 많이 구분되는, 저것을 다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틀 때는 심의규정도 의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금 손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이 규정 적용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제27조(품위유지)보다는 제26조(생명의 존중)에 보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제37조(충격·혐오감)에도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제26조(생명의 존중) 제3항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것 하나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권고' 의견이었는데 '권고'나 '의견제시'나 같은 행정지도라는 차원에서 '의견제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규정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26조(생명의 존중)제3항으로 바꾸는 것과 제37조(충격·혐오감)제5호, 현재 사무처가 제시한 제27조(품위유지)제5호 보시고...

- 정민영 위원
 - 제26조(생명의 존중)제3항을 추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도 추가하는 것으로...
- 이광복 위원장
 - 그러면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외에 제26조(생명의 존중)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제시'로 의결하겠습니다.

■ 제2022-방송-16-0105호 <KNN-TV 'KNN 모닝와이드'>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105호 KNN-TV 'KNN 모닝와이드' 안건 보고해 주세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KNN-TV 'KNN 모닝와이드' 3월 30일 방송분입니다. <에어부산, 이디야커피와 공동 판촉> 보도에서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이디야커피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판촉 이벤트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에어부산이 5월 13일까지 에어부산 인스타그램과 부산경남 이디야커피 매장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과 이디야 커피캡슐 머신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이벤트 기간, 당첨자 발표일, 대상 매장, 참여방법, 경품 내용 등 구체적인 이벤트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유사사례 알려주세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아까 말씀하셨던 'JTV 8 뉴스'에서 특정 상품의 할인 판매기간,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권고'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저는 같은 '권고'로 하겠습니다.
- 윤성욱 위원
 - 저도 '권고' 의견입니다.
- 정민영 위원
 - 저도 '권고'로 하겠습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도 '권고'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권고' 의견입니다. 이 안건 전원 합의로 '권고'로 의결합니다.

■ 제2022-방송-16-0106호 <KBS-1AM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106호 KBS-1AM '최경영의 최강시사' 안건 보고해 주세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최경영의 최강시사' 3월 23일 방송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스언박싱>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진행 상황, 관련 쟁점 및 여론의 향방 등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다'며 '58.1%는 반대, 33.1%는 찬성인데 여론조사 하나라서 몇 개가 더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면서 동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와 조사일시,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취지 등을 고려한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및 제6항이며,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건 붙임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지난번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예,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15차 소위에서 '의견제시' 하셨습니다.

○ 김우석 위원

- 이게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라디오 출연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진행자가 여론조사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봐야 10초 안쪽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게다가 지금 기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패널도 아니고 기사가 하면 미리 점검을 하고 했을 텐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윤성욱 위원

- 모든 라디오 방송에서 심의규정상 공개하라고 하는 7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모두 제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걸리는 것만 제재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방송내용에서 조사기관과 신뢰 수준, 오차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사의뢰자나 조사기관보다 이 신뢰 수준과 오차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내용을 보면 단정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없음'에 가까운 의견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명문화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음'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의견제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영상 화면이 아닌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소개할 때 이 7가지를 다 소개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고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민영 위원

- 저도 '의견제시' 의견입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도 '의견제시' 의견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의견제시' 의견입니다. 영상매체처럼 하다못해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막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디오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제작하는 측면에서 번거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심의규정상 엄연히 기본적인 것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안건 '의견제시' 4인, '의견진술' 1인 해서 '의견제시'로 의결합니다.

○ 김우석 위원

- 결론이 났으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에는 4호부터 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 성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반복되면 우리가 중징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첨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022-방송-16-0107호 <KBS-1AM '주진우 라이브'>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KBS-1AM '주진우 라이브', 이것도 여론조사 관련이죠? 안전 보고해 주세요.

○ 오인희 지상파방송팀장

- 의결번호 107호 KBS-1AM '주진우 라이브' 3월 23일 방송분입니다. 뉴스브리핑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이대남' 용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기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스!> 코너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대 남성을 뜻하는 '이대남'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해당 용어 사용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며 '성별을 막론하고 20대에서 50대 응답자 중 71.1%가 부정적으로 봤다. 88.9%가 이대남, 이대녀와 같은 구분은 성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등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면서 조사일시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취지를 고려한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입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관련 인식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자체 조사하여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이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전 붙임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정민영 위원

- 저는 앞선 안전하고 비슷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시' 의견입니다.

○ 윤성옥 위원

- 저도 '의견제시' 의견입니다.

○ 황성옥 위원

- 저도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아침, 저녁 대표방송에서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수 의견이지만 '의견진술'을 하고, 더불어서 이런 여론조사는 아무리 언론진흥재단에서 했다고 해도 '이대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좋은 용도로 쓰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이슈화하는 것도 문제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여기에 매몰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의견제시' 의견입니다. 이 안건도 '의견제시' 4인, '의견진술' 1인 해서 '의견제시'로 의결합니다.

라. 방송심의에 관한 건(중편보도채널 부문)(제2022-방송-16-0108~0109호)

■ 제2022-방송-16-0108호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안건 보고해 주세요.

○ 장경식 중편보도채널팀장

- 의결번호 108호 채널A의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3월 25일 방송분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안건입니다. 육아 관련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상생활 중 의뢰자인 엄마의 초등학교 아들이 길거리에서 때를 부리고 엄마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거나 엄마 머리채를 잡아채는 장면, 육아 및 유아심리 전문가인 출연자의 협조 하에 개선 방법을 진행하던 중 돌발적으로 아들이 엄마를 발로 차고 유아심리 전문가를 밀치거나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민원취지를 고려한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정민영 위원

- 이것도 크게 보면 일종의 관찰 예능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아이의 과격한 행동이 방송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뺏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맥락을 연출 의도에 맞게 조금 빼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조작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장면을 억지로 연출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 장면을 방송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저도 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요새 굉장히 핫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어제 밤에도 MBC의 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방송에도 부부싸움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해결 과정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빼기는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윤성욱 위원

- 저는 장면을 삭제하기까지는 어렵고 절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항 적용을 제27조(품위유지) 조항 대신에 제19조(사생활 보호) 조항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공익성도 있고 시청자들에게 대단히 많이 지지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히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의 출연이 자녀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고 부모의 동의하에 프로그램이 제작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초상, 개인정보 이런 사적 영역을 다룰 때 방송사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를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공개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는 성장하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재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반의 정도가 크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송사가 이 사안의 중요성은 조금 감안하고 프로그램을 앞으로 제작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의견제시' 의견입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는 정 위원님과 김 위원님과 같이 '문제없음'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요즘 이 프로그램,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젊은 엄마들 육아에서 어려운 점을 상의할 데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거기에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특히 지금 안전이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기서 흔히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포맷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이 아이의 경우 엄마를 발길질하는 것 때문에 이 솔루션이 결국은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혀서, 예를 들어서 저런 프로그램을 본 엄마들이 '너 재하고 놀지 마.'라든가 '재가 우리 옆집 아이인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따돌림을 당할 지경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그런 낙인 때문에 아이가 사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장면을 빼면 저 프로그램이 성립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점이 고민이기는 한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찾아보면 UN에서 어린아이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준칙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것은 사실 다 어긋납니다. 심의규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손을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 어린아이가 과연 사회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저도 '의견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세 분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셔서 이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견제시' 의견의 내용들을 잘 종합,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22-방송-16-0109호 <채널A '강철부대 2'>

마. 방송심의에 관한 건(전문편성채널 부문)(제2022-방송-16-0110~0113호)

■ 제2022-방송-16-0110호 <SKY '강철부대 2'>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채널A, SKY '강철부대 2' 안건은 같은 내용이죠? 병합해서 보고해 주시죠.

- 장경식 중편보도채널팀장
 - 의결번호 109호 채널A와 전문편성채널 부문 110호 SKY의 '강철부대 2' 4월 12일 방송분입니다. 육·해·공군 예비역 출연자들이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기 위해 팀 간 대결을 벌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팀 연합전 미션을 앞두고 전야제를 진행하며 'GS25' 편의점과 유사한 디자인, 글씨체 형태의 로고를 부착한 '강철25' 이동식 PX 차량에 차례대로 들어가 야식을 고르는 장면에서 해당 로고를 화면 전면에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뽕글이, 소세지, 음료 등 간접광고 상품들을 화면 중앙에 부각하여 노출하거나 별도로 탁자 위에 진열한 상태로 보여주는 장면, 출연자들이 야식을 다 먹은 후 미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인 건강기능식품을 가져와 양손에 들어 보여주며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지방 합성되는 거 억제하게 이거 먹자.'라고 언급하자 '가볍게 침투하기 위한 특급 비책'이라고 자막을 고지하고, 이를 먹고 난 또 다른 출연자가 '몸이 쨍쨍해지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였습니다. 붙임 6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간접광고 계약은 'GS25'와 '강철부대'의 콜라보 상품들에 한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GS25'는 협찬 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윤성옥 위원
 - 간접광고를 하면서 음성으로 표현하고 자막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간접광고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기로 광고주와 약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견진술'이 필요합니다.

○ 김우석 위원

- 이것을 보고서 저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듯이 군대 갔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찬찬히 보니까 팀별로 하다가 연합해서 하는 그런 순간의 장면을 만드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다른 팀이었는데 연합했을 때 어떤 장면을 연출할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PX에서 유대와 휴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흐름 자체, 사실은 간접광고는 흐름의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강철부대' 이런 상품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사실 '맨올로지켓' 이 상품은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저는 행정지도 선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민영 위원

- 저도 후반부에 나오는 '맨올로지켓'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나온 장면들은 사실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 취지를 고려하면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권고' 의견입니다.

○ 황성욱 위원

- 간접광고는 정말 위원님들 사이에서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반부 쪽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강철25'가 너무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결론적으로 보면 간접광고가 허용되어 있는 한 프로그램 취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정지도에서 합의하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우리가 최근에 자주 접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간접광고보다 이것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 아닌가 해서, 마지막 부분만 거슬렸고요. '강철25'라는 것은 사실 특정 편의점을 떠올리게 하는 게 있는데, 저도 행정지도로 한다고 하면 '의견제시'나 '권고'나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은 '권고' 하셨고 김 위원님은 행정지도라고 하셨는데 '권고'까지 괜찮습니까?

○ 김우석 위원

- 그렇게 하시죠.

○ 황성욱 위원

- 어차피 행정지도면 저는 '의견제시'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우석 위원

- 그러면 또 바뀌는데, '의견제시'로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의견제시'로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은 '권고' 유지하시죠?

○ 정민영 위원

- 예, '권고' 유지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의견제시' 3인, '권고' 1인, '의견진술' 1인 해서 '의견제시'로 의결합니다.

■ 제2022-방송-16-0111호 <FISHING TV '피싱그랩퍼스'>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111호 FISHING TV '피싱그랩퍼스' 안건 보고해 주세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의결번호 111호 FISHING TV의 '피싱그랩퍼스' 3월 10일 방송분입니다. 시청자 민원 제기건으로 민원인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부터 출연자의 구명조끼, 모자, 상의 등에 '그랩퍼스'라는 브랜드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방송내용 확인결과 낚시 프로그램에서 금속 미끼를 사용하여 대형 어종을 낚는 '지깅'이라는 낚시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그랩퍼스'의 명칭과 로고가 부착된 옷과 모자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민원의 취지를 고려한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이며, 본 건과 관련하여 방송사는 사전 소명을 통해 '그랩퍼스'는 상품의 브랜드 명칭이 아닌 국내의 온라인 지깅 동호회 명칭이라고 소명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 그러면 이게 브랜드 명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호회 명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제목 자체가 '그랩퍼스'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하는 것인데 이게 브랜드 명칭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동호회 명칭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럴 법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 황성욱 위원

- 혹시 제가 놓쳤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방송을 보기는 봤는데요. 여기 출연자가 '그랩퍼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하는 말은 한 게 없죠?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브랜드와 관련한 말은 한 적이 없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리면, 네이버 카페에 실제로 '피싱그램퍼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의 운영자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동호회 의류나 모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 김우석 위원

-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잘 되니까 자기들끼리 활용하려고 물품들, 굿즈도 만드는데 외부에 팔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네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그러면 이름은 동호회로 보는 게 맞겠네요.

○ 정민영 위원

- 그런데 이게 동호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이죠?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데 제가 혹시 방해가 될까봐 말을 나중에 할까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흔히들 보셨겠지만 유럽의 유명한 '투르 드 프랑스'라든가 이런 사이클 경기 그리고 골프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특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하듯이 몸 앞뒤로 브랜드 이름이 잔뜩 집어넣어져 있고요. 그리고 골프 대회에서도 보면 옷, 모자에 자기들 스폰서들 이름 다 달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안 지웠다고 심의규정을 적용해서 논의할 것인가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것도 그것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 황성욱 위원

- 위원장님이 그렇게 운을 떼셨으니까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피싱그램 퍼스'고요. 그램퍼스 뜻을 찾아봤더니 범고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출연자가 어떠한 이야기도 안 하고 낚시만 하던데, 제 입장에서는 의도를 추론할 수도 있고 의심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실제적인 진실이 광고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광고를 위해서 출연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심의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아무

리 악의적으로 하려고 해도 객관적 지표가 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만약에 정말 간접광고로 이렇게 했다면 정말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심의기준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어서 저는 '문제없음' 의견을 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 저도 비슷한데요.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에 보면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이라고 해서 이것은 상품을 주로 하는 규정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동호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특별히 이 내용 자체에 상품을 광고하는 멘트가 없기 때문에 저도 '문제없음'으로 하겠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이 프로그램 제목이 '피싱그램퍼스'인데 이것은 일종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정민영 위원

- 그러면 계속 매주 방송되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정기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 지역이나 어종을 바꿔가면서 낚시하는 장면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 정민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이것 말고도 '그램퍼스' 소속 김진일이라는 사람이 계속 출연하고 '그램퍼스'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저는 여쭙보고 싶었던 게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램퍼스'는 어쨌든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을 약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옷을 입고 나오고 그냥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인데, 이 프로그램 제목이 자꾸 걸려서 일단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윤성욱 위원

-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해외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좋은 예입니다. 간접광고의 좋은 예죠. 간접광고는 하되 그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간접광고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상품에 대해서 음성이나 자막으로 표현을 해서 게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게재하라는 게 법령의 취지라고 봅니다. 간접광고와 관련해서 어느 만큼 브랜드와 상품을 노출할 것인지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음성이나 자막으로 소개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규정이고, 그 외의 브랜드나 상품은 노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우에는 간접광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노출했으니까 명백하게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해주셨지만 동호회 사이트에서 판매, 영리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저는 '의견진술' 입장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 방송프로그램 제목도 그렇고 신경을 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제시'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문제없음' 2인, '의견제시' 2인, '의견진술' 1인 이렇게 같습니다. 제가 문제없다고 해야 좋을지,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을 바꾸실 분은 안 계십니까?

○ 황성욱 위원

- 조금만 추가 보충을 하자면 사실은 사무처에서 '그램퍼스'가 영리활동을 하고 그랬던 것을 보고 받고 제가 '어, 이랬어?'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자체가 '피싱그램 퍼스'이고 시청자들이 볼 때 이것을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이, 저처럼 보고를 받아서 동호회인지 영리활동을 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광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이 '그램퍼스'라서 그냥 낚시하고 로고 찍힌 것이, 그런 측면에서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심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민원 신청 취지를 다 고려해본다면 광고효과에 대한 규정 위반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면 저도 '의견제시' 정도로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그렇게 되면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 황성욱 위원

- 예,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그러면 '의견제시' 3인, '문제없음'과 '의견진술' 각 1인 해서 '의견제시'로 의결합니다.

■ 제2022-방송-16-0112호 <인디필름 ‘메디컬 빅데이터’>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112호 인디필름 ‘메디컬 빅데이터’ 안전 보고해 주시죠.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의결번호 112호 인디필름의 ‘메디컬 빅데이터’ 2월 18일 방송분입니다.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1부 비뇨기질환을 주제로 비뇨의학과 전문의, 2부 임플란트를 주제로 치과 전문의가 출연해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면 좌측 상단에 프로그램 문의 전화번호 자막을 수시로 고지하는 내용, 화면 하단에서 실시간 상담이 어렵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2회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였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3항 제3호입니다. 아울러 인디필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 동일한 코너인 ‘메디컬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주의’로 결정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우석 위원

- 최근에 ‘과징금’ 한 것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런 유사한 것 ‘과징금’ 의결한 것 있었잖아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예, 동일 계열 방송사에서 방송해서 ‘과징금’ 의결하셨습니다.

○ 김우석 위원

- 그러니까 외주사가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이것은 ‘과징금’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도 ‘과징금’에 동의하겠습니다.

○ 정민영 위원

- 저는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 윤성욱 위원

- 저는 ‘과징금’ 정도 제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과징금’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이 안전은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로 의결합니다.

■ 제2022-방송-16-0113호 <채널W ‘행복 만들기’>

- 이광복 위원장
 - 다음 안전도 비슷하죠? 채널W ‘행복 만들기’ 안전 보고해 주세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의결번호 113호 채널W의 ‘행복 만들기’ 2월 4일 방송분입니다.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위, 식도 난치성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주제로 한방내과 전문의가 출연해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문의 전화번호 자막을 수시로 고지하는 내용, 화면 하단 흐름 자막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진료나 진찰을 대신하지 않으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자막을 2회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였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3항제3호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민영 위원
 - 이 건도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 윤성욱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김우석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황성욱 위원
 - 저도 ‘의견진술’ 의견이기는 한데 이 채널도 과거에 또 이런 적이 있나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채널W는 의료행위 위반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 황성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저도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이 안전도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로 의결합니다.

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건(제2022-방송-16-0114호)

■ 제2022-방송-16-0114호

- 이광복 위원장
 - 마지막 의결 안건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건' 보고해 주세요.

- 이성우 전문편성채널팀장
 - <의결사항 바>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법」 제33조제4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붙임에 첨부한 바와 같이 '19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결정하여 방송한 OCN의 '용루각:비정도시' 등 1,370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제1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주시면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시청자민원 등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 이광복 위원장
 - 「시청자민원 등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보고해 주시죠.

- 정기용 방송심의기획팀장
 - 「시청자민원 등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 검토한 민원은 심의요건 미비 1건, 유사심의사례 17건, 기타 1건 등 총 1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복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이광복 위원장

- 차기 회의 일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수 방송심의국장

- 차기 회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8. 폐 회

○ 이광복 위원장

- 이것으로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5분 폐회】